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복지국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12. 05.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복지국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01호, 제302호 및 제304호로 2017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나.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다. 상위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2017.12.31.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운영 폐지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내용은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안 제2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고,

- 안 제4조제5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그와 관련하여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10조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과 관련「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를 “회계연도마다”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고,
- 안 제10조제3항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과 관련「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비율을 “10분의 5이하”를 “10분의 2이하”로 상위법에 맞게 조정함.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 안 제27조의2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고,
- 안 제29조제4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그와 관련하여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30조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정비하였음.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 안 제5조제5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그와 관련하여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5조의2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고,
- 안 제6조제5항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 안 제11조제4항의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과 관련「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비율을 “10분의 5이하”를 “10분의 2이하”로 상위법에 맞게 조정함.

❍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제4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